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5
----------	-----

2024. 9. 6.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8. 23. 강남구청장(보건행정과)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9. 6.)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보건소장 이종철)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이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3천원)에 직접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 국가 시행 예방접종 종목(수수료 무료)으로 변경된 관련 내용 반영 등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종전의 상위법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규정함(안 별표)

나. 무료로 변경된 종전의 유료 예방접종 종목(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프루엔자)을 삭제함(안 별표)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수료)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 (4)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적용대상)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별표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7. 5. ~ 2024.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건강진단 수수료의 경우 총리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해당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일부 예방접종 수수료의 경우 해당 금액이 무료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조례의 별표 내용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금액의 경우
 - 정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금액을 기존에는 총리령¹⁾으로 정하여 소관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괄적으로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2023년 11월 해당 총리령 개정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인 2024년 11월이 되기 전에 그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일부 예방접종 종목 수수료 금액의 경우

- 상위법²⁾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명시하여 지정한 인플루엔자 종목,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³⁾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인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조례안의 별표를 보면:

○ 별표 제1호 사목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금액의 경우

- 정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2018년 3천원으로 정한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6호]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0호]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인플루엔자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시행 2023. 9. 25.]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이후 감염병 유행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약 6년간 그 수수료 금액을 인상하지 않았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우 업종 특성상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천재지변·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검진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보완하여야 할 미비점이 나타났고, 그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보건소 운영 현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건강진단 대상자는 기존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여진대로 건강진단 수수료를 냈으나, 해당 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3일부터는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
-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4년에는 기존의 규칙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종전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개정이 이루어진만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건강검진 수수료의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부서가 주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 및 보건소 운영 현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수수료 가격 산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물가의 경우 다른 지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물가 및 그 상승률이 동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및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논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건강검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이유>4)

(총리령 제1916호 입법취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

※ 법제처 제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확인.

○ 별표 제4호 아목 “인플루엔자” 접종 수수료 금액의 경우

- “인플루엔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목이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신부에게는 무료로 접종함.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기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접종대상자의 규모 및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⁵⁾.
-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별표 제4호 아목 “인플루엔자”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별표 제4호 라목 “장티푸스” 및 마목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수수료 금액의 경우

-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은 기존에 질병관리청장 고시로 관리 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약품 해당연도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왔음.
- “장티푸스”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병하는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인데 전염

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시행 2023. 11. 22.)

5) 유선으로 관리책임부서(강남구청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예방접종실(02-3423-7223))에 확인한 내용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20년 2월 2일부터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외출국자들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종목이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야외 활동이 많은 기간에 발생하는데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종목임. 이 두 가지 종목은 질병청에서 공급한 백신 물량과 향후 매칭을 통한 사업비 지원 등으로 접종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료 접종 시행 중⁶⁾이므로 별표 제4호 라목 및 마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별표 제4호에서 라목 “장티푸스”, 마목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아목 “인플루엔자”를 삭제하여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접종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특수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 수수료 무료 전환을 시행하고, 그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질서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가변이 여기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임.
- 별표 제1호 사목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금액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는 무리가 없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취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구체적인 <건강검진 수수료의 산출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출처 상동.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2024년 1월, 신증후군출혈열은 2024년 4월부터 무료로 시행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5
----------	-----

제출연월일: 2024. 8. 23.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보건행정과

1. 제안이유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이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3천원)에 직접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 국가 시행 예방접종 종목(수수료 무료)으로 변경된 관련 내용 반영 등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종전의 상위법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규정함(안 별표)
- 나. 무료로 변경된 종전의 유료 예방접종 종목(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을 삭제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수료)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 (4)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적용대상)[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별표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7. 5. ~ 2024.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 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가. <삭 제>	1 통		
	나. <삭 제>			
	다. 일반진단서			
	라. <삭 제>			
	마. <삭 제>	1 통	3,000원	
	바. <삭 제>			
	사.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 통	다만,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가”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아. 사망진단서	1 통	500원	
	자. <삭 제>	1 통	300원	
	차. 결핵진단서			
카.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 통	300원		
타. 증명서 재발급	1 통	300원		
파. 1통 추가 발급	1 통	100원		
2. <삭제>				
3. <삭제>				
4. 접종	가. <삭 제>	1회분	가. 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 제>			
	다. B형 간염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아. <삭 제>			
5. 검 사	가. B형 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전액으로 한다.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남자 21,000원 (AFP,CEA,CA19-9,PSA) 여자 28,000원 (AFP,CEA,CA19-9,CA15-3,CA125) 재검 종목당 5,500원	
	다. 암표지자검사	1회	(수수료무료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라. 갑상샘검사	1회	10,000원(T3, FreeT4, TSH)	

			15,000원	
6. 방사선 촬영	마. A형 간염검사	1회		
	가. 영상사본 교부	1매	3,000원	
7. 진 료	가. 치아홈메우기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 전액으로 한다.
8. 건강증진센터	가. 체력검진	1회	8,000원	
	나. 골밀도 검사	1회	6,000원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종목	단위	금 액	구분	종목	단위	금 액
1.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가.~바. (생략)			1.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 항에 “카” 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		사.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이하 단서조항 현행과 같음)
	아.~파. (생략)				아.~파.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접종	가.~다. (생략)	1회분	가. 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 에는 100원으로 한다.	4. 접종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장티푸스	1회분			<삭 제>	<삭제>	
	마. 유행성출혈열	1회분			<삭 제>	<삭제>	
	바.~사. (생략)						
	아. 인플루엔자	1회분			바.~사. (현행과 같음)		
					<삭 제>	<삭제>	
5.~8. (생략)				5.~8.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제1호)

4. 작성자

- 질병관리과 지방간호서기 김정희(02-3423-726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 8.] [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일부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2023. 3. 28., 2023. 6. 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 2018. 3. 27., 2023. 6. 13., 2024. 1. 2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시행 2023. 9. 25.]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시행 2023. 11. 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